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안자

○서울특별시장

2. 제안이유

○주차장법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과
규제개혁 차원에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자 하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주차장설치제한지역내의 주차전용건축물
에 설치 가능한 주차장의 시설의 종류를
“근린생활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근린공
공시설, 업무시설, 운동시설”에서 “근린
생활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업무시설, 운
동시설”로 함.(안 제2조제2항)

나. 도시계획사업 등에 의한 노외주차장에 설
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를 “근린
생활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근린공공시설,
업무시설, 운동시설, 전기시설, 판매시설
또는 관람집회시설”에서 “근린생활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업무시설, 운동시설, 문
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로
함.(안 제10조제1항)

다. 주차장설치제한지역내의 노외주차장에 설
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를 “근린
생활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근린공공시설,
업무시설, 운동시설”에서 “근린생활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업무시설, 운동시설”로
함.(안 제10조 제2항)

라. 주차장설치제한지역내 부설주차장의 최저
설치기준 초과부분에 대해 용도변경이
가능한 시설의 종류를 “근린공공시설, 근
린생활시설, 창고시설, 노유자시설”에서
“근린생활시설, 창고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아동관련시설·노인복지시설”
로 함.(안 제13조의2제5항)

마. 노상주차장중 화물의 하역을 위한 하역주
차구간의 주차요금은 지역여건 등을 감
안하여 조례 별표에서 규정하는 주차요
금과 달리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안 제3조제1항)

바. 노상주차장의 하역주차구간에 주차할 수
있는 차종을 화물자동차와 16인승이하의

소형승합자동차로 한정하고 화물자동차
등도 1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할 수 없도
록 하고 있으나, 하역주차구간의 효율적
운행을 위하여 다른 종류의 자동차도 주
차할 수 있도록 하되,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는 1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할 수
없도록 함. (안 제3조제2항제5호 및 제7
조의2제4항 등)

사. 공용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위탁관리
수수료율을 주차장여건에 따라 탄력적으
로 적용할 수 있도록 주차요금 징수금액
의 “30/100”에서 “30/100이상”으로 조정
함. (안 제5조제2항)

아. 주차장법에서 민영주차장의 관리규정 신
고제가 폐지됨에 따라 민영 주차장의 주
차요금 징수시간 단위에 관한 규정(최초
단위 30분, 추가단위 10분)을 폐지함. (제
11조의2 삭제)

자. 부설주차장 추가설치 명령을 받은 경우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
존시설물을 위한 주차용도의 도로점용
허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주차장
법에서 부설주차장 추가설치 명령제가
폐지됨에 따라 동 도로점용허가제를 폐
지함. (제20조 삭제)

차. 건축법시행령 및 주차장법시행령의 개정
으로 시설물의 종류 구분이 변경됨에 따
라 부설주차장 설치대상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기준과 주차장설치제한지역내의
부설주차장 설치제한기준 등을 조정함.
(안 별표2 및 별표3)

○시설물의 용도분류를 13개군에서 8개군
으로 단순화하고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부분적으로 조정함.

○다가구·다세대 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동일하게 함으로써 다가구·다세
대 주택간 용도변경을 용이하게 함.

4. 검토요지

가. 시설물 종류의 용어정리(안 제2조제2항)

○건축법시행령('99. 5. 9)과 주차장법시행
령('99. 6. 30)의 개정에 따라 시설물 종
류의 구분이 변경됨에 따라 주차전용건
축물의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
분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를 현
행 '근린생활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근린

공공시설, 업무시설, 운동시설'에서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업무시설, 운동시설'로 변경하는 것임.

나. 노상주차장중 하역주차구간의 주차요금은 시장이 따로 정하고자 함. (안 제3조단서)

○노상 및 공영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조례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다만 노상주차장 중 하역주차구간의 주차요금은 시장이 따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차장법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에서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화물주차구간의 주차요금을 별도로 시장이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검토되어야 할 것임.

다. 하역주차구간의 가산금 부과대상을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가 1시간 초과하여 주차할 경우로 변경(안 제3조제2항제5호)

○현행 노상주차장에서 가산금 부과대상에 "하역주차구간에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가 주차한 경우"에서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가 1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한 경우"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하역주차구간의 효율적 운영 측면에서 문제가 없다고 봄.

라. 주차거부규정 일부 삭제(안 제4조)

○주차장관리자가 주차장 이용을 거절할 수 있는 대상에

-주차요금 사전납부 대상차량으로서 사전납부를 거부하는 경우(제6호)

-1회 이용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주차장에서 이용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하고 있는 경우(제7호)를 삭제하고자 하며, 사전 주차거부보다 다른 방법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함.

마.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수수료 조정(안 제5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 및 관리를 구청장에게 위탁할 경우 현행 징수금액의 3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탁관리수수

료로 교부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인건비에 미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위탁관리수수료를 징수금액의 30/100이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9조에 의하여 문제가 없다고 봄.

바. 사전 징수요금대상 조정(안 제6조)

○현행 타 시·도 등록자동차에 대하여 서울시자동차와 달리 주차요금을 사전 징수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으므로 삭제하는 것은 바람직함.

사. 하역주차구간의 주차제한 차종 폐지(안 제7조의 2)

○현행 하역주차구간에서의 주차시간은 1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 것을 화물자동차는 예외로 규정하고

○현행 화물자동차 및 16인승 이하의 소형승합자동차 외 차량의 주차금지와 관련하여 차종제한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하역 주차구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함.

아. 노상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사용제한 규정 폐지

○조례 제8조가 주차장법 제10조와 중복되어 조례정비 차원에서 폐지하고자 하는 것임.

자.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등에 관한 용어정비(안 제10조)

○현행 도시계획사업 등에 의한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가 '근린생활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근린공공시설, 업무시설, 운동시설'로 규정하던 것을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업무시설, 운동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로 개정코자 하며

○현행 주차장설치 제한지역내에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에 있어서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는 '근린생활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근린공공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업무시설, 운동시설'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차장법시행령 개정('99. 6. 30)과 건축법시행령개정('99 5. 9)으로 시설물의 용도구분이 변경됨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카. 조례 제11조의2(주차시간 단위) 폐지

○ 민영 노외주차장의 주차시간 단위를 규정하던 것으로 민영 노외주차장 설치신고제도가 설치통보제로 변경되어 주차장법시행규칙 제8조 내지 제10조가 모두 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것임.

타. 기계식주차장의 주차대수의 산정기준을 현행 시장이 정하도록 한 것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안 제13조)

파. 부설주차장 설치제한지역 및 설치제한기준(안 제13조의 2)에 있어서 관련법시행령 개정으로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문제가 없음.

하.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유료, 이용시간, 이용대상차량, 기타 주차장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시장이 결정고시(조례 제14조의6) 하던 것을 공영부설주차장 자율화로 삭제하는 것임.

거. 기존시설물을 위한 노상주차장 특례(조례 제20조) 폐지

○ 주차장법에서 부설주차장 추가설치 명령제가 폐지되어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것임.

너.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별표 2, 3>

○ 시설물 종류가 현행 22개에서 8개로 단순화시킨 것은 건축법시행령과 주차장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이며 조정결과 일부시설물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 또는 완화되는 효과가 발생되었으나 이는 불가피하며

○ 특히 다가구 주택의 세대당 설치기준이 현행 0.6대 이상에서 0.7대 이상으로 강화됨으로써 신축하고자 하는 다가구주택건설업체와 주민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나, 현재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 변경하여 구분 등기가 가능하게 되었으나, 양 주택간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상이하여 용도변경이 곤란하므로,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0.7대 이상)으로 상향조정한 것이며, 이에 따라 민원이 예상되나 주택 부설주차장 확보율이 44% 밖에 되지 않는 현실에서 다소의 민원이 있더라도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함.

○ 주상복합건물의 건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주차장설치제한지역에서 주상복합건물의 주택부분에 대해서도 주차장설치 최저한도를 적용해야 한다는 민원이 있으나, 주차장 설치 제한제도는 도심교통난 해소를 위한 주차수요 억제정책이므로 주택에 적용하기는 곤란한 것으로 생각함.